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599

발의연월일: 2025. 5. 26.

발 의 자:김선민·황운하·신장식

김준형 · 장종태 · 정춘생

백선희 • 서왕진 • 김남희

전진숙 • 전종덕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조정위원회"라 함)를 두도록 하면서,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2025년 2월 기준 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,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전체 위원의 약 44%인반면, 환자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15%가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또한,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할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 한 위원 수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.

이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, 조정부의 조정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되, 그 중 3명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대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·제3항).

법률 제 호
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 제23조제1항 중 "5명"을 "7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"을 "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명,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후 조정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 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같은 항 제3호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
 -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

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	제20조(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
영) ① (생 략)	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	②
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	
조정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	
다. <u><후단 신설></u>	<u>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이 전</u>
	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
	<u>여야 한다.</u>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23조(조정부) ① 조정위원회의	제23조(조정부) ①
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	
위하여 <u>5명</u> 의 조정위원으로 구	<u>7명</u>
성된 분야별, 대상별 또는 지역	
별 조정부를 둘 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조정부는 제20조제2항제1호	③
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(판사	
로 재직하고 있거나 10년 이상	
재직하였던 사람 1명을 포함하	
여야 한다), <u>제2호부터 제4호까</u>	제3호에 해당하는
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	사람은 3명, 제2호 및 제4호에
<u>람</u> 은 각각 1명으로 구성한다.	해당하는 사람

④ ~ ⑧ (생 략)

④ ~ ⑧ (현행과 같음)